

무배당 IBK평생변액연금보험_1501

약관

목 차

1. 가입자유의사항	3
2. 주요내용 요약서	6
3. 보험용어해설	8
4. 무배당 IBK평생변액연금보험 ₁₅₀₁ 약관	10

본 약관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 조건을 기술한 내용으로서 귀하께서 이 보험에 가입하신 때부터 동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저희 회사와 귀하간의 권리, 의무 및 그 이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규정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소중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개발 담당자 : 상품개발팀 박보름(02-2270-1600)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변액연금상품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적용되는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공시이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집니다.
- 연금 및 해지환급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중도인출 및 월대체보험료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월대체보험료는 본문 설명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1형(기본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하여 드리며, 2형(스텝업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부터 “연금개시시점 - 3년”까지의 기간동안 계약자적립금이 아래 표에 예시되어 있는 해당 단계에 도달하는 때에는 해당 단계의 보증금액을 새로운 최저연금적립금으로 재조정하여 보증하여 드립니다.

스텝업 단계	최저연금적립금 스텝업 보증금액
1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2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0%
3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40%
4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60%
5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80%
6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0%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종신연금형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여 종신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같이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종신연금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는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유형1> 은행 적금 또는 원금보장 상품으로 인지한 사례
<사례1> 은행의 적금과 같이 원금보장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중도 해지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으로 가입된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주 목적으로 보험 상품이며, 단기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은행의 저축성 상품과는 다릅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2> 사업비 차감 관련
<사례2> 사업비 차감 사실을 설명 받지 못했거나, 가입 당시 설명 받은 사업비 차감 수준이 사실과 달리 과소한 수준으로 알고 가입된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이 상품은 변액연금보험 상품으로 계약자적립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특별계정에 투입하여 운용, 적립합니다. 사업비 수준은 가입 당시 제공되는 "핵심상품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3> 중도인출 관련	
<사례3>	납입한 보험료(원금)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상품이라는 설명만 듣고 가입한 후, 수개월이 지나 중도인출 가능금액을 알아본 결과,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최소적립액 이상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 제기 * 연금보험 상품은 중도인출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원금)가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하며, 장래 유지비를 충당할 최소적립액을 남겨 두어야 하므로 일정기간 지난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만큼 적립액이 감소되어 해지환급금 및 장래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비용(사업비)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의 경우]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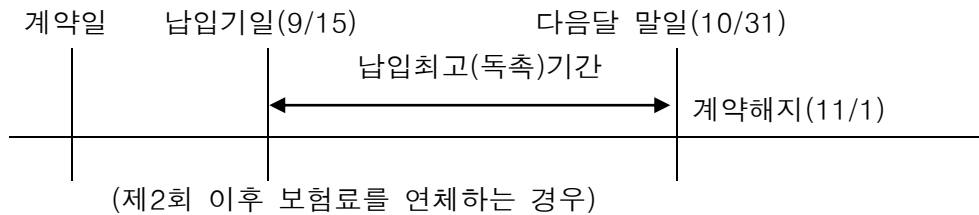
5.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납입기일의 다음달 말일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최초 청약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를 다음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일시생활자금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4가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최대 3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생활자금(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 ~ 50% 선택)

2. 연금

① 종신연금형(기본연금형, 조기집중형, 부부연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②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확정

③ 상속연금형

④ 실적연금형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IBK평생변액연금보험_1501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13
제2조	【용어의 정의】	1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5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5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6
제6조	【보험금의 청구】	16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7
제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7
제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7
제10조	【조기연금전환 옵션】	18
제11조	【주소변경통지】	18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9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1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9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9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20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20
제18조	【청약의 철회】	21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21
제2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1
제21조	【계약의 무효】	22
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3
제23조	【보험나이 등】	24
제24조	【계약의 소멸】	2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5
제2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5
제27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26
제2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6
제29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27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7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8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9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등

제33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29
제34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30
제35조	【펀드의 유형】	30
제36조	【보증금액 재조정(스텝업 보증)에 관한 사항】	31
제37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32
제38조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34
제39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35
제40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35
제41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5
제42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37
제43조	【특별계정의 폐지】	38
제44조	【기타】	38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38
제4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8
제4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9
제48조	【해지환급금】	39
제49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39
제50조	【보험계약대출】	40
제51조	【배당금의 지급】	41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52조	【분쟁의 조정】	41
제53조	【관할법원】	41
제54조	【소멸시효】	41
제55조	【약관의 해석】	41

제5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2
제57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42
제5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2
제59조 【개인정보보호】	42
제60조 【준거법】	42
제6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2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43
<별표2> 실적연금형에 관한 사항	46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47

무배당 IBK평생변액연금보험_1501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바.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사.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1형(기본형)은 “연금개시나이 - 5세”(단, 3년납의 경우 “연금개시나이 - 7세”) 연계약해당일까지, 2형(스텝업형)은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추가로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매회 1만원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의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일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날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

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단,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및 실적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의 보험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변액보험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은 제외)
------	---

다. 특별계정: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상이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산과 구별하여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과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하는 경우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실적연금형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음)
------	---

라. 펀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마. 계약자적립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50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계약자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
-----	--

적립금	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작수가 달라져 향후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 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아’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4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사. 월대체보험료: 계약 유지를 위해 차감하는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 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아. 최저연금적립금: 연금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1형(기본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2형(스텝업형)의 경우 제36조(보증금액 재조정(스텝업 보증)에 관한 사항) 제4항에서 정하는 스텝업 보증금액(이하 “스텝업 보증금액”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자.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차.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카.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타.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파.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하.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는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u>제3조(의료기관)</u>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액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단, 연금지급형태의 일부를 실적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실적연금형에 대해서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 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체결시점부터 10년 이내 기간 동안에는 연복리 2.5%(일복리 0.006765%), 10년 초과 기간에는 연복리1.5%(일복리 0.004079%)를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의 변경내역 및 산출방법 등을 계약자에게 연2회 이상 통지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매월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외부지표금리(국고채수익률 등 시중 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연1.0%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연1.5%), 적립액은 공시이율(연 1.0%)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 1.5%)로 적립됩니다.

제10조 【조기연금전환 옵션】

① 납입기간이 종료된 계약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기연금전환옵션을 통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5% 이상이며, 500만원 이상인 계약
2. 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에 주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45세(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인 경우 35세) 이상이며, 85세 이하인 계약 (다만, 종신연금형의 부부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도 45세 이상 8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조기연금전환옵션에 의해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적연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③ 조기연금전환옵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신청일 이후 월계약해당일 또는 연계약해당일 중에서 조기연금전환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나이를 새로 계산하여 연금개시나일로 적용하며, 전환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④ 조기연금전환옵션에 의해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소 연금개시나이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45세,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인 경우 35세로 합니다.

제11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합니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 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
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연4.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
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는 청약할 때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종신연금형(기본연금형, 조기집중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제18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걸쳐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 정한 자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1. 종신연금형(기본연금형, 조기집중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및 실적연금형
: 피보험자 본인

2. 종신연금형(부부연금형) : 피보험자 본인(이하 “주피보험자”라고 합니다)과 연금개시시점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고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기본연금형으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 연금액은 기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자격 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2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설명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으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상법 제 732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제 732조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이라도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2. 기본보험료
3. 연금개시나이
4. 연금지급형태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납입기간과 변경 후 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제6항,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의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직전의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4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⑥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 전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연금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⑦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제1항 제4호의 연금지급형태를 다음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일시생활자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가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3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연금형(기본연금형, 조기집중형(1.5배/2배/3배), 부부연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2.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확정
3. 상속연금형
4. 실적연금형
5. 일시생활자금: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50%

⑧ 제7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별 계약자적립금의 분할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지정한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시생활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인출)하는 형태로 일시생활자금의 분할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⑨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의 부부연금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연금개시시점의 보험나이가 모두 45세 이상 8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⑩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⑪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

제24조 【계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

제27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

② 제1항에서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까지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합니다.
 -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8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9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계약은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 최소거치기간”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단,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이 피보험자의 나이 8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거치기간	보험료 납입완료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며 3년납의 경우 7년, 5년납 이상인 경우 5년으로 합니다.
--------	--

- ④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 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횟수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유지를 위한 해당월의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 및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신청 당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신청일 이후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공제되어야 하는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의 200% 미만인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⑨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다음에 정한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잔액
2.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잔여 납입일시중지기간의 합계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4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의 제3항에서 정한 인출제한금액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표준이율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기본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제외, 연체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대한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연체이자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로 하며,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 제2영업일”로 합니다.

⑤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을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⑥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3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③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34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펀드

국·공채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2. Active 주식형 펀드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3. MSCI 인덱스 주식형 펀드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4. KRX 100 인덱스 주식형 펀드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KRX100 인덱스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5. KOSPI200 인덱스 주식형 펀드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KOSPI200 인덱스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6. 한국대표그룹 주식 재간접형 펀드

국내 대표그룹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로 한국대표그룹 주식형 펀드는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7. 글로벌 채권형 펀드

포트폴리오는 외화표시 이머징마켓 국공채에 순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8. 글로벌 주식형 펀드

국내외 주식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8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9. 차이나퍼시픽 주식 재간접형 펀드

중국 및 아시아 국가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로 차이나퍼시픽 주식형 펀드는 중국 및 아시아 주요국가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6조 【보증금액 재조정(스텝업 보증)에 관한 사항】

① 보증금액 재조정에 관한 사항은 2형(스텝업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액 재조정은 제3항에서 정한 스텝업 기간(이하 “스텝업 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계약자적립금이 제4항에서 정한 최저연금적립금 스텝업 보증금액(이하 “스텝업 보증금액”이라 합니다)에 도달할 경우 해당 단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새로운 최저연금적립금으로 재조정하여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최초 가입할 때 최저연금적립금 보증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며, 스텝업 기간동안 보증금액이 재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합니다. 또한 스텝업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금개시 계약해당일까지는 스텝업 기간 종료일의 스텝업 보증금액을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합니다.

③ 스텝업 기간이라 함은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종료일부터 “연금개시나이 - 3년” 시점에

해당하는 달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의해 보험료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료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적용합니다.

④ 스텝업 보증금액이라 함은 단계별로 아래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스텝업 단계	최저연금적립금 스텝업 보증금액
1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2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0%
3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40%
4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60%
5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80%
6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0%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4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스텝업 보증금액 예시

(기준 : 가입일 2014년 1월 25일, 기본보험료 20만원, 납입기간 5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5년)

구분	날짜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스텝업 보증금액 (최저연금적립금)
납입기간 종료일	2019년 01월 24일	12,000,000원	9,000,000원	12,000,000원
스텝업 기간	2021년 02월 03일	12,000,000원	16,900,000원	16,800,000원
	2023년 03월 15일	12,000,000원	15,300,000원	16,800,000원
스텝업 기간 종료일	2026년 01월 24일	12,000,000원	20,500,000원	19,200,000원
연금지급개시일	2029년 01월 25일	12,000,000원	18,500,000원	19,200,000원

제37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5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채권형 펀드 또는 글로벌 채권형 펀드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채권형 펀드와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의 합은 최소 50%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외의 각 펀드들의 편입비율은 30%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펀드별 편입비율을 5%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단, 펀드별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되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없이 계속 납입되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설정한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⑤ 2형(스텝업형)을 선택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보증금액 재조정(스

템업 보증)에 관한 사항)에 의해 최저연금적립금이 스텝업 보증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 증액되는 계약해당일의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각 스텝별 의무선택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보증금액 증액 이후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시에는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각 단계별 의무선택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스텝의 보증금액으로 증액되는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각 스텝별 의무선택비율이 되도록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자동조정하여 연금개시시점까지 운영합니다.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증금액이 증액되면 아래에서 정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의무선택비율에 따라 자동조정된다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설명합니다.

스텝업 단계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의무선택비율
1단계	50% 이상
2단계	60% 이상
3단계	65% 이상
4단계	70% 이상
5단계	75% 이상
6단계	80% 이상

단, 위에서 정한 의무선택비율이 해당 스텝의 보증금액으로 증액되는 시점에 이미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조정 없이 기존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계속 유지됩니다.

□ 스텝업 단계에 따른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의무선택비율 변경 예시

(기준 : 가입일 2014년 1월 25일, 기본보험료 20만원, 납입기간 5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5년)

구분	날짜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스텝업 보증금액 (최저연금적립금)
납입기간 종료일	2019년 01월 24일	12,000,000원	9,000,000원	12,000,000원
스텝업 기간	2021년 02월 03일	12,000,000원	16,900,000원	16,800,000원
	2023년 03월 15일	12,000,000원	15,300,000원	16,800,000원
스텝업 기간 종료일	2026년 01월 24일	12,000,000원	20,500,000원	19,200,000원
연금개시일	2029년 01월 25일	12,000,000원	18,500,000원	19,200,000원

1) 2019년 1월 24일

구분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전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후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외의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외의 펀드
계약자적립금	4,500,000원	4,500,000원	4,500,000원	4,500,000원
펀드별 편입비율	50%	50%	50%	50%

2) 2021년 2월 3일 : 스텝업 3단계 도달

구분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전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후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외의 펀드		이외의 펀드
계약자적립금	8,450,000원	8,450,000원	10,985,000원	5,915,000원
펀드별 편입비율	50%	50%	65%	35%

3) 2023년 3월 15일 : 스텝업 3단계 도달후 계약자적립금 감소

구분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전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후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외의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외의 펀드
계약자적립금	8,415,000원	6,885,000원	8,415,000원	6,885,000원
펀드별 편입비율	55%	45%	55%	45%

※ 스텝업 3단계 도달 이후 개별펀드의 가치 변경으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의무선택비율(65%)을 하회하더라도 추가적인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계약자가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이 의무선택비율(65%)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4) 2026년 1월 24일 : 스텝업 4단계 도달 후 스텝업 기간 종료

구분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전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후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외의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외의 펀드
계약자적립금	16,400,000원	4,100,000원	16,400,000원	4,100,000원
펀드별 편입비율	80%	20%	80%	20%

※ 스텝업 4단계 도달시점에서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이 의무선택비율(70%)을 상회하므로 추가적인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스텝업 기간 종료 후에는 스텝업 단계에 해당하는 채권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의무선택비율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은 없습니다.

⑥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예정일 직전 제2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⑦ 회사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변경은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 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금의 0.1%(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7항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연4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⑨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38조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펀드와 계약자적립금의 펀드가 동일하고,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은 계약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 ② 납입기간 중 펀드변경에 의해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 됩니다.
- ③ 계약자는 납입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납입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펀드 자동재배분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매 6개월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별 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의 펀드자동재배 분은 매 6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이 1:1의 비율로 재배분 됩니다.
-------------	---

제39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40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41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의 선임 등)

-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

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제42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 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3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44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로 변경하여 종신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종신연금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8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감액 또는 제45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의해 연금지급형태를 실적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해지환급금 계산시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해지환급금(실적연금형 제외)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부터 10년 이내 기간 동안에는 연복리 2.5%(일복리 0.006765%), 10년 초과 기간에는 연복리 1.5%(일복리 0.004079%) 최저보증)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④ 해지환급금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⑤ 제3항의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9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 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상숙연금형 해지환급금에서 인출제한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할 때의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

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가 상숙연금형 또는 상숙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상숙연금형의 해지환급금에서 인출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적립액)이 아래에서 정한 최소적립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 기본보험료의 5배와 500만원 중 큰 금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적립액 인출시 : 500만원(상숙연금형의 해지환급금 기준)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직전의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직전의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⑦ 1회당 인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인출 신청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60%이하로 하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인출수수료를 포함한 인출금액은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의 투자수익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 및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①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1,000만원의 60%는 6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

	② 계약일로부터 10년이후: 1,000만원의 60%인 6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해지환급금 500만원이고,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 최소적립액이 300만원일 경우 → 500만원의 60%는 300만원이나, 최소적립액인 3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2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

제50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대출신청 당시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회사가 정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회사가 정하는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5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

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제55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7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9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60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6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① 연금(제3조)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종신연금형 (기본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종신연금형 (조기집중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10년동안(10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년 이후(11회부터)의 연금연액의 1.5배, 2배 또는 3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②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에서 정한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일시생활자금의 분할비율 및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 종신연금형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기본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종신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조기집중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종신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10년동안(10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년 이후(11회부터)의 연금연액의 1.5배, 2배 또는 3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부부연금형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종신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받은 연금연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 100세 ((101세-연금개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확정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상속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상속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 실적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실적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동안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계약자 보유좌수를 연금지급횟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별표2) “실적연금형에 관한 사항” 참조

■ 일시생활자금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시점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일시생활자금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지급

(주)

1.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단, 실적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 및 제4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일시생활자금 또는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을 곱하여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일시생활자금의 분할비율 및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9. 연금지급형태의 100세 보증 및 100세 확정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보험년도 말까지 보증 또는 확정 지급합니다.
10.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시점의 상속연금형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1. 실적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다만, 잔여 지급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3.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14.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 표2>

실적연금형에 관한 사항

□ 실적연금형

연금지급형태를 실적연금형으로 변경할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운용되는 특별계정(펀드)에서 계속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운용하여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동안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begin{array}{l} \text{연금지급액} \\ \text{(유지비 포함)} \end{array} = \frac{\text{연금지급일 현재 계약자 보유좌수}}{\text{잔여연금지급횟수}} \times \text{연금지급일 현재 기준가}$
--

□ 실적연금형 연금액 예시

(기준 : 연금개시시점 1억좌 보유, 10년간 매월 연금지급)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
보유좌수	100,000,000	99,166,667	98,333,333	97,500,000	96,666,667	...
잔여연금 지급횟수	120	119	118	117	116	...
1,000좌당 기준가격	1,100	1,050	1,000	950	900	...
연금액	912,106	870,647	829,187	787,728	746,269	...

- (주) 1. 상기 연금액 예시표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가격, 보유좌수, 연금지급액 등을 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연금지급액과는 상이합니다.
2. 매회 지급되는 연금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른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시된 연금액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4. 계약자(연금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5. 실적연금형의 지급주기는 매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1개월, 매3개월, 매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는 연금지급기간 중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립이율 계산(제7조 제2항 및 제48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시 지급금 (제24조 제2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연금 (제3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48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48조 제2항)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 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